

「2024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본 승인안은 2025년 5월 27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5년 6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임.

1. 제안이유

2024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지방공기업법 제35조(결산), 동법시행령 제36조(결산서의 제출등)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 승인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백만원)

회계별	예산액 (A)	수 납 액 (B)	B/A (%)	지 출 액 (C)	C/A (%)	차기이월액 (D)	D/A (%)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29,496	30,492	103.4	22,748	77.1	7,744	26.3

○ 세입결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A)	징수 결정액 (B)	B/A (%)	수 납 액 (C)	C/A (%)	잉여금 (D)=(C)-(A)	미수 납액 (E)=(B)-(C)	E/A (%)
합 계	29,496	31,098	105.4	30,492	103.3	995	606	2.1
현 년 도	26,482	27,668	104.5	27,330	103.2	848	338	1.3
전기미수금	200	616	307.9	347	173.7	147	268	134.2
전기이월액	2,814	2,814	100	2,814	100	0	0	0

○ 세출결산

(단위:백만원)

회 계 별	예 산 액 (A)	지 출 액 (B)	B/A (%)	이 월 액 (C)	C/A (%)	불 용 액 (D)	D/A (%)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29,496	22,748	77.1	6,618	22.4	130	0.4

○ 차기이월금 처리상황

(단위:백만원)

구분 회계별	계	건설개량 이 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순세계잉여금 (잉여금+불용액)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7,744	3,766	37	2,815	1,125

3. 검토결과

□ 세입 · 세출결산 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차기이월액	비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9,496	30,492	22,748	7,744	

○ 2024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액은

- 예산액은 29,496백만원이며,
- 세입결산액은 30,492백만원,
- 세출결산액은 22,748백만원이고,
- 차기이월액은 7,744백만원입니다.

□ 세입결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비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9,496	31,098	30,492	606	

- 2024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30,492백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수납율은 103.4%로 초과달성 하였으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8.1%에 그쳐 미수납액이 606백만원 발생하였습니다.

□ 세출결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9,496	22,748	6,618	130	

- 세출결산액은 29,496백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77.1%를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618백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22.4%이며 불용액은 130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202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결산총괄

- 수입예산 결산액은 30,492백만원으로
수익적 수입 8,433백만원, 자본적수입 19,244백만원,
이월재원 2,814백만원입니다.
- 지출예산 결산액은 22,748백만원으로
수익적 지출 9,565백만원, 자본적 지출 10,431백만원
이월예산 지출 2,752백만원입니다.
- 자금결산 결과는
전기이월액 2,814백만원, 수입 27,677백만원
지출 22,748백만원, 차기이월액 7,744백만원입니다.

□ 재무상태표를 살펴보면

- 자산총계는 311,538백만원으로 전기대비 1.8%인 5,615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 유동자산은 전기대비 2,433백만원이 증가한 9,386백만원으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로 파악되며,
 - ▶ 비유동자산은 전기대비 3,182백만원이 증가한 302,152백만원으로 안미지구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2,981백만원의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 부채총계는 전기대비 1백만원이 감소한 5백만원이며,
- 자본총계는 311,533백만원으로 전기대비 5,616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타회계건설보조금, 도비보조금 등의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 총수익은 8,791백만원으로 매출액은 전기대비 7.0% 증가한 7,852백만원으로 급수수익의 증가가 주원인으로 판단되며 영업외수익은 전기대비 24.3% 증가한 939백만원입니다.
- 총비용은 20,964백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4.8% 증가하였으며, 매출원가는 전기대비 851백만원이 증가한 19,513백만원으로 급수공사비 및 민간위탁비의 증가가 주원인으로 작용하였고 판매비와 관리비는 전기대비 114백만원이 증가한 1,451백만원으로
- 비용 증가폭이 수익 증가를 상회함에 따라 12,172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급수수익 및 총괄원가를 살펴보면

적요	금액(백만원)	연간조정량(m³)	m³당요금(원)
급수수익(상수도요금수입)	6,772	4,610,705	1,468.70
총괄원가	31,476	4,610,705	6,826.75
톤당 손실			5,358.05
요금현실화율(%)			21.51
요금인상요인(%)			364.82

- 연간조정량은 4,610,705톤이고, 상수도요금수입은 6,772백만원으로 톤당 요금은 1,468.70원입니다.
- 수도물 생산의 총괄원가는 31,476백만원이며, 톤당 원가는 6,826.75원으로, 결함액은 24,704백만원이며 364.82%의 요금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 연간생산량은 8,396,000톤이며, 연간조정량은 4,610,705톤으로 유수율은 54.9%로 전기 대비 2.6% 감소하였습니다
- 총괄원가 산정 결과 당기 중에 적용된 효율로는 사업의 총괄원가를 보상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검토의견

- 2024년도 상수도 요금현실화율은 21.5%로, 지난해 대비 1.2%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2023년도 도내 평균인 52%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총괄원가 31,476백만원 중에서 자본비용을 차감한 영업비용은 18,994백만원으로, 급수수익으로는 영업비용의 35.7%만 회수하고 있으며 지난해 대비(전년 35.6%회수) 0.1% 증가하였습니다.
- 2024년 10월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의 개정으로 3년간 매년 25%씩 수도요금을 인상하여 2023년 20.3%, 2024년 21.5%인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을 2027년 39.7%까지 높일 계획이나 계획 이행과 함께 3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 유수율의 개선 없이 요금체계 만으로는
원가 회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므로 노후 관로의 정밀 진단
및 교체, 무단 급수 차단, 미수납 관리 강화 등 지속적인 노력이 병
행되어야 실질적인 경영수지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사료됩니
다.

〈도내 지자체별 요금 현실화율 현황〉

(2023년말 현재)

지자체	평균단가(원/㎥)	생산원가(원/㎥)	현실화율(%)
강원도	1,067.5	2,052.3	52.0
평창군	1,456.6	7,166.2	20.3
춘천시	733.4	1,234.0	59.4
원주시	1,085.6	1,173.1	92.5
강릉시	1,122.2	1,355.0	82.8
동해시	877.3	1,509.0	58.1
태백시	988.2	2,438.6	40.5
속초시	1,110.7	1,324.3	83.9
삼척시	1,241.0	3,667.0	33.8
홍천군	1,466.1	3,623.5	40.5
횡성군	1,314.9	1,622.0	81.1
영월군	1,091.9	5,241.0	20.8
정선군	1,387.9	3,294.0	42.1
철원군	1,115.5	2,981.0	37.4
화천군	629.7	4,004.0	15.7
양구군	834.7	1,600.0	52.2
인제군	1,299.9	4,000.0	32.5
고성군	1,399.2	3,619.5	38.7
양양군	1,350.1	2,679.5	50.4

※ 출처 : 환경부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2023 상수도통계

〈최근 3년 유수율 현황〉

구분	연간생산량(톤)	연간조정량(톤)	유수율(%)
2024년	8,396,000	4,610,705	54.9
2023년	7,780,000	4,477,995	57.6
2022년	7,425,000	4,336,029	58.4

※ 2023년도 전국 평균 유수율 86.3%

-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77.1%이며 일반회계(76.4%) 및 기타특별회계(61.9%)보다 높으나 2023회계연도와 비교할 때 지출액 36억원이 감소하고 이월액 32억원이 증가함으로써 2023년도 집행률 91.4%보다 상당히 저조하였습니다. 이는 안미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의 계속비 이월(2,815백만원)과 운교3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1,068백만원)의 공기부족 및 속사2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890백만원)의 인허가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한 건설개량이월(명시이월)의 증가가 주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며 향후 우리군의 신속집행 정책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작성된 회계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을 보면 특별회계의 재무제표는 평창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2024년 12월 31일과 2023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일반기업회계기준, 지방공기업법,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결산지침 및 평창군 상수도사업 회계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35조(결산) ①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모든 장부를 마감하여 결산을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지방직영기업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해당 연도의 사업보고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그 밖의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36조(결산서의 제출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자금운용계산서 또는 현금흐름표
5. 회전기금을 둔 경우에는 그 운용상황서
6. 결산부속명세서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결산부속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1. 수익비용명세서
2. 비유동자산 명세서
3. 재고자산명세서
4. 지방채명세서

5. 예산전용조서
6. 예비비사용조서
7. 예산이월액조서
8. 계속비집행조서
9. 계속비정산보고서(계속비에 관련된 계속연도 또는 그 이월된 연도가 끝난 경우에 한한다)
10. 채무부담행위집행조서
11. 전년도이월액사용조서
12. 미수액조서
13. 미지급액조서
14. 불납결손액조서
15. 세입·세출외 현금현재액조서
16. 성질별 세출결산명세서
17. 기타 필요한 명세서